

|  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-|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2278 | <b>[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<br/>일부개정조례안]</b><br><b>심사보고서</b> |
|----------|------|--|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1.(화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를 정비하고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, 상호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 따른 행정계획의 범위 정비(안 제5조제2항)
  -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행정계획의 범위를  
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·장기 행정계획으로 변경
- 상위 법령에 따른 위원회 통보 근거 신설(안 제5조제5항, 제6항)
  -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 결과

반영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

-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14조)
  - 상위 법령에 따라 기업 및 시민단체 등의 민관협력 및 지원 조항 신설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14조 및 제26조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지속가능발전 기본법

- 제14조(법령 제·개정에 따른 통보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·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·장기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·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

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,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·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·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26조(이해관계자 협력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,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·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,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

행에 관한 정보교환, 기술협력 및 표준화, 공동조사·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

제9조(법령 제·개정에 따른 통보 등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

안의 통보 시기는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·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.

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·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·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(중·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)으로 한다.

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·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